

#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 192 호                |
| 의결년월일 | 2005. 5. .<br>(제 15 회) |

|      |            |
|------|------------|
| 제출일자 | 2005. 4. . |
| 제출자  | 계 룡 시 장    |

## 1. 제정이유

-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행자부예규)에 의거,
-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향후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코자 함.

## 2. 주요내용

- 기금조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하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안 제3조).
-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안 제4조).
-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이를 심의함(안 제5조, 안 제6조).
-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기획감사실장)과 기금출납원(예산담당)을 둠(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재정법(제42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 제156조)
  -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행자부예규)

##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②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는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발 취)

###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및기금의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42조 (결산상잉여금의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것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잉여금의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자치부예규 제92호, 2002. 4.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무관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이 자주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채무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05조제2항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2.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채무상환비율”이란 당해연도 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원리금에 대한 일반재원 수입액의 비율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충당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실질수지비율”이란 당해연도 결산상 수입과 지출과의 실질적인 차액에 대한 일반재원의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5. “감채기금”이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제4조(지방채무관리 측정지표)** 지방채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측정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방채발행의 승인기준)** 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적채단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2.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
3.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이상인 단체
4.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기준 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또는 기준 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5. 최근 5년간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②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하 “적정사업”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
2.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전 항에 의한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의 적채단체와 적정사업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소모성 경상사업비와 경상경비
  - 가. 경상적 유지보수비 및 일반적 조사·연구비
  - 나. 소모성 기자재비 및 내용연수가 극히 짧은 시설비

## 2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가 소액인 사업

가. 광역시·도 : 30억원 미만사업

나.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 15억원 미만사업

다.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 10억원 미만사업

라. 군 및 자치구 : 7억원 미만사업

※ 다만, 지방청사기금을 차입선으로 하는 소방관서, 읍면동청사, 사업소의 청사신축비와 상·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은 소액사업인 경우에도 예외로 함.

## 3 기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예외적용기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채의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

1. 단기·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부담이 없는 차환채의 발행
2. 상환재원확보가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정부 주요시책 또는 재해 등으로 사업시행이 긴급한 사업
4. 상환재원이 국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또는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사업
5. 계속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달리 재원조달을 할 수 없고,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해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제7조(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심사대상)** 지방채 발행의 승인심사(이하 “지방채심사”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방채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중에 추진하여야 할 국가시책사업과 각종 재해발생 및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와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
2.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결과의 반영

**제9조(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 매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행예정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정기분)을 수립하여

시·군 자치구에서는 7월 31일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본청분 및 시군구의 지방채발행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시 전항의 절차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행계획을 확정하여 10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발행계획 확정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
2. 지방채발행 사업계획서
3. 지방채 상환계획서
4. 서약서
5. 시군구 지방채사업에 대한 시도의 검토의견서
6. 채무현황보고서
7. 채무상환비율현황(과거 및 미래기준 포함)
8. 실질수지 비율현황
9. 채무감축계획 및 채무운용보고서(채무상환비율 20% 초과단체에 한함)
10. 신청사유서(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
11.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첨부서류(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등)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완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채발행 변경)** 지방채발행 승인후 발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 보고로서 갈음한다.

1.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이율을 낮추는 경우
2.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권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지방채 상환년한을 단축하거나 또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및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4. 지방채의 상환년한을 연장하지 않고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 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은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에 대한 결정이며, 동 승인액을 지방의회가 심의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부적정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정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방채 발행을 엄격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2.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목적외로 운용한 경우
3. 지방채발행 관련자료를 허위·과장에 의한 신청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법령이나 지방채발행 승인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②전항에 의하여 부적정하게 지방채를 발행 또는 운영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의 감액 등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채 감채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채무감축을 위한 기금(이하 “감채기금”이라 한다)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적립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감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단체
2. 당해연도 지방예산(일반+특별회계)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
3.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
4.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단체
5. 차입자금이 단기·고금리에 치중되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③전항에 의한 자치단체는 매년 발생하는 당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중 행정 자치부장관이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관리계획)**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적절한 상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 20%를 초과하는 채무과다단체는 향후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자체 설정토록 하고, 감채기금의 적립 및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활용 등 지방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신청시 향후 5개년간의 채무운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지방채무관련보고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신청, 승인, 발행, 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내역, 발행일시, 차입형태, 회계구분, 자금구분, 차입선, 금리, 상환조건, 상환재원, 당해연도 총 발행누계 등을 포함한 내용을 지방채전산화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기타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등 필요한 자료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채발행 승인심사위원회의 설립·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사업별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채발행승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지방채무운용 등)** 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사업은 그 발행 및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을 판단하여 적기에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차입후 자금의 장기보관 등으로 이자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집행한다.

③지방공기업사업에 대하여는 인건비 절감, 합리적인 요금관리, 계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공기업운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기준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사항 등은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지 방 채 무 관 리 측 정 지 표

### ① 채무상환비율(일반재원 충당능력지표)

$$= \frac{\text{최근 4년간 (평균)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text{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수입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채무상환비율 산정시는 일반회계에서 원리금을 지원 또는 전액 상환 (전출금 포함)하는 특별회계도 포함하여 통합재정수지로 계산

i)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되는 채무상환 전출금을 포함

ii) 채무상환액중 조기상환액 및 차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함

iii) 향후 채무상환부담을 고려, 『미래기준』 채무상환비율도 추가 반영

### ② 실질수지비율(결산상 실질수지지표)

$$= \frac{\text{실질수지(형식수지 - 익년도 이월금)}}{\text{일 반 재 원}} \times 100$$

· 형식수지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익년도이월금 = 계속비이월금 + 명시·사고이월비 + 보조금집행잔액

### ③ 지방세징수비율(지방세 징수전망지표)

$$= \frac{\text{기준년도(기준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text{기준전년도(기준전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 \times 100$$

### ④ 1인당(평균)채무액

$$= \frac{\text{총 채무액}}{\text{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times 100$$

※ 채무상환비율과 상관관계를 비교하면서 보조지표로 활용

### ⑤ 예산대비 채무비율

$$= \frac{\text{총 채무액}}{\text{최종예산(총계규모)}} \times 100$$

## □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행정자치부)

-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관련

○ 순세계 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 사용

-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비율 해당액은 채무 상환재원으로 사용토록 의무화

·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 : 활용 권고

·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자치단체 : 활용 의무화

○ 순세계잉여금 기금적립비율

| 채무상환비율      | 10~20%미만 | 20~30%미만 | 30%이상 단체 |
|-------------|----------|----------|----------|
|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 〈우리시 채무액 및 채무상환비율〉

(단위:백만원)

| 구 분            | 연도말채무액(백만원) |                  |             | 채무상환<br>원리금① | 일반재원<br>② | 채무상환비율<br>$\textcircled{c}=\textcircled{a}/\textcircled{b}$<br>$\times 100$ |
|----------------|-------------|------------------|-------------|--------------|-----------|-----------------------------------------------------------------------------|
|                | 계           | 일반회계<br>기타특<br>별 | 공기업<br>특별회계 |              |           |                                                                             |
| 2004<br>(결산예상) | 44,125      | 11,670           | 32,455      | 2,485        | 48,372    | 5.14                                                                        |
| 2005(예산)       | 43,615      | 9,715            | 33,900      | 2,417        | 53,458    | 4.52                                                                        |